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463
----------	-------

발의연월일 : 2023. 7. 26.

발 의 자 : 김 웅 · 허은아 · 임병헌
김승수 · 김예지 · 지성호
박성민 · 서정숙 · 유경준
김형동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회의원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임.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음.

특히,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 개회를 연달아 하는 방식으로 남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임시회)”를 “(임시회 및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회는 임시회 집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한다.

⑥ 국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다.

1.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제4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2.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3.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4.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시회) ① ~ ③ (생략)	제5조(임시회 및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국회는 임시회 집회요구에 도 불구하고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재적의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 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한다.
<u><신 설></u>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요구 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한 다.
<u><신 설></u>	⑥ 국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집 회할 수 있다. 1.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 구로 제4항에 따른 임시회 집 회 유보 요구를 철회하는 경 우 2.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 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u>3.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u> <u>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u> <u>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u> <u>태인 경우</u> <u>4.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u> <u>원과 합의하는 경우</u>
--	--